



성동구보건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변경처분)**

1.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징금 420만원을 부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2. 식품위생법 제8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영업 정지 처분으로 변경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내역

업종	일반음식점	신고번호	20140036286(8670)	업소명	헬로피쉬
영업자	유수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426(상왕십리동, 오정빌딩)		
위반내용	신고된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영업 2차				
처분	기존	과징금 420만원 부과(영업정지 7일에 같음)			
	변경	영업정지 7일(2015. 2. 16. ~ 2015. 2. 22.까지)			

붙임: 행정처분명령서 1부. 끝.

주무관

변귀석

식품위생팀장

정창훈

보건위생과장

정주섭

보건소장

02/10
김경희

협조자

시행 보건위생과-2246 () 접수 ()

우 133-880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3길 10 / http://bogunso.sd.go.kr
전화 02-2286-7154 /전송 02-2286-7124 / captainlay@sd.go.kr / 부분공개(6)